

부산광역시사하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안이유

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(공포2004. 1. 29, 법률 제7129)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제정·공포(2004. 7. 29)됨에 따라, 공중화장실 시설설치 및 관리기준 등의 근거가 없어, 효과적인 유지 관리가 어려워 법령에서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례로 제정하여 근거로 삼고자 함.

2. 관계법령

-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

3. 주요골자

- 가.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자는 위생적으로 유지·관리하고 편의용품 비치와 최적시설 유지(안 제4조)
- 나. 화장실 청결유지, 소독 및 도색주기등 관리기준을 정함(안 제9조)
- 다. 구청장은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을 상시 개방하게 하고, 법인·개인 화장실에 대하여는 시설주와 협의, 개방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1조, 제12조)
- 라. 유료화장실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구청장에게 신고 후 운영하도록 함(안 제16조)
- 마.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(안 제18조)

4. 검토의견

본 조례 제정건은

- 공중화장실 시설설치 및 관리기준을 제도적으로 마련 하므로써 효율적인 위생관리가 용이하고 기존시설물의 정비와 도시발전을 연계시켜 변화와 활력이 넘치는 도심환경이 조성 되도록 유도하고
- 공중화장실 설치의 필요와 장소의 적정성에 따라 합리적인 수급관리가 가능할 뿐 아니라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행정의 실효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토대가 구축되며 나아가서는 국민보건증진과 대민 편의제고에 크게 기여한다고 판단됨
- 그리고 관련법령에 공중화장실 설치근거가 명문화되어 있는점을 감안한다면

위 조례 제정건은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됨

2004년 12월

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정 금 배